

풀무원건강생활

공정거래가이드북 하도급부문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함

하도급법이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수급사업자 보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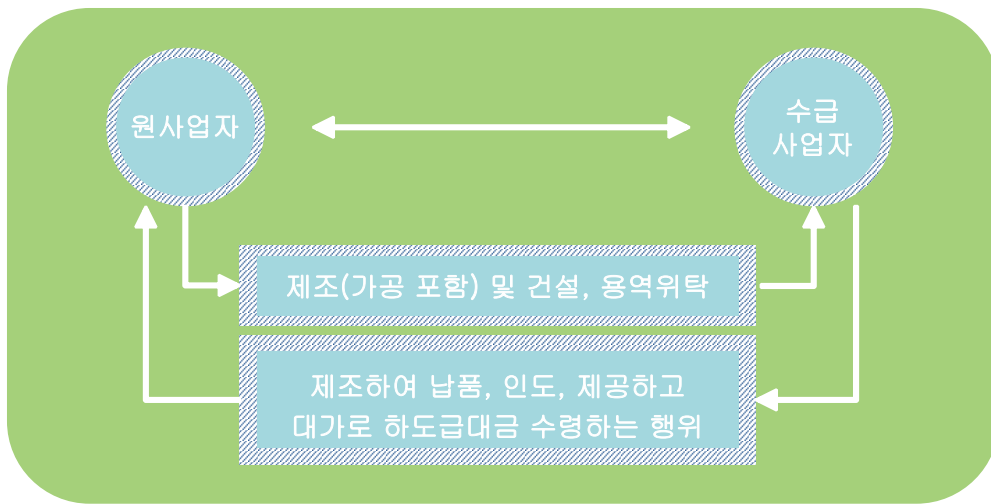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하도급법의 적용

- 적용업종 :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축
- 적용대상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
- 적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구조



법 적용 대상사업자

▪ 원사업자 요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자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 수급사업자 요건

-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자'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검사 및 결과통지

하도급서면 발급

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판단기준

■ 주관적 요건 : "부당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가"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문제됨
-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가"

-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래지역에 있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
- 동일 목적물을 2사업자 이상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대가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Must not do these

-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
-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별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저가로 결정
-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검사 및 결과통지

하도급서면 발급
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 위탁시(계약체결시)

- 위탁품목, 단가, 검사기준 등 구체적 거래조건을 확정된 후,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초 제조작업 착수 전 발급

▪ 위탁품목 또는 계약내역 변경시

- 위탁품목변경(신규품목 추가, 일부품목 제외), 단가조정(인상/인하), 스펙변경 등 위탁품목 또는 계약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제조작업 착수 전 발급

▪ 기타

- 하도급대금 감액시(법 제11조)기술자료 제공 요구시(법 제12조의3), 목적물 등 수령시(법 제8조), 검사결과 통지시(법 제9조)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서면발급의 방법

▪ 위탁시(계약체결시)

- ☞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계약이 불가할 경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
- ☞ 계약체결 전 법정기재사항의 누락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무처리규정 및 LOA기준에 따라 반드시 **법무부서의 사전 검토**가 필요

▪ 위탁품목 또는 계약내역 변경시

- ☞ 기본계약서에 부대하는 개별계약서(부대합의서 등)을 통해 갱신계약을 체결함
- ☞ 갱신계약 체결의 방법은 위탁시(계약체결시) 서면발급 방법을 준용함

하도급서면 법정기재사항

- ☑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와 장소
-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검사 및 결과통지

하도급서면 발급
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료의 요구가 가능함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조상 하자 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기술자료의 종류

-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자료**
 -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정보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자료 요구의 방법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발급**
 - ☞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발급**을 통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법정 기재사항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지급 방법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요구액, 제공일 및 제공방법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기술자료 요구 서면 양식

기술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그 밖의 사항						
원사업자 풀무원건강생활(주)와 수급사업자 (주)○○○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풀무원건강생활(주) 대표이사 ○○○ (인) 수급사업자 (주)○○○ 대표이사 ○○○ (인)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서면 발급

기술자료 요구

검사 및 결과통지

위탁취소·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9조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의 검사

▪ 검사의 기준

- ☞ 목적물의 검사기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함
- ☞ 검사의 기준은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조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기준약정서** 등의 부대계약서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제조작업 착수 후 확정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중요

▪ 검사의 시기 및 방법

- ☞ 목적물은 수령 즉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검사의는 품질관리기준약정서에 기재한 방법 등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검사결과의 통지

▪ 통지의 시기

- ☞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검사 합격의 통지는 하지 않을 수 있음
- ☞ 합격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제조상 하자를 원인으로 반품이 불가능함에 주의

▪ 통지의 방법

- ☞ 검사결과의 통지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만 유효함
- ☞ 검사결과 통지 서면의 법정 기재사항은 없으나, **품목/입고일/검사일/검사방법/검사자/불합격 사유/불합격 수량 기타 검사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검사결과 통지서 예시

제목 : 검사결과 통지

1. 품목 : ○○○
2. 입고일 : 201X년 XX월 XX일
3. 검사일 : 201X년 XX월 XX일
4. 검사방법 : 기본계약서 제XX조
품질관리기준약정서 제XX조
5. 검사자 : QC파트 ○○○
6. 불합격 사유 : 성형불량
7. 불합격 수량 : 1,000EA

※ 첨부 : 시험성적서 1부, "결"

201X년 XX월 XX일

- ☑ 입고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법정 검사기간 도과에 따른 부당 반품 발생 방지
- ☑ 검사결과에 대한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검사방법 및 검사자, 불합격 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명시하여 통지함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검사 및 결과통지

하도급서면 발급
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취소·반품

위탁취소·반품이 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제조상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취소·반품이 가능함
-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하여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주의

위탁취소·반품이 가능한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불이행시
-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품질관리 기준을 어기거나 납품한 물품에 명백한 제조상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Must not do these

-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서면 발급

기술자료 요구

검사 및 결과통지

위탁취소·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 지급기일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법적 지급기한의 기산일이 시작됨

▪ 수급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기한내 대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압류되거나 수급사업자의 파산 등 원사업자에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한 내 법원에 공탁하여야 함
- ☞ 공탁비용은 하도급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하도급대금에서 공하지 말고 향후 별도 구상권 청구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하도급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

▪ 지연이자 지급

- ☞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 50,000,000 원
- ② 지급지연일수(초일불산입) : 10일
- ③ 지연이자 : $50,000,000 \times 0.155 \times 10/365 = 212,390$

▪ 어음할인료 지급

-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7.5%의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 ①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금 : 50,000,000 원
- ② 지급일 : 5/20, 법정지급기일 : 5/30, 어음만기일 : 7/20
- ③ 어음할인료 : $50,000,000 \times 0.075 \times 51/365 = 523,972$

하도급법 위반 Check List

위반유형	점검사항
서면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제조 위탁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는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선급금 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가?
	15일 초과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하고 있는가? 어음으로 지급 시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7.5%)를 지급하고 있는가?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검사기준과 방법은 쌍방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결정되었는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는가?
	10일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합격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세금계산서발행일) 법정지급기일(60일)내에 지급하고 있는가?
	목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가?
	60일 초과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25%)를 지급하고 있는가?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7.5%)를 지급하고 있는가?
	대금 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채무 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는가?
	어음 할인료 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원사업자의 무사항

하도급법 위반 Check List

위반유형	점검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가?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가?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가?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장비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는가?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발주의 임의취소, 변경이나 목적물 수령, 인수의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가 있는가?
부당감액 금지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있는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있는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하도급대금 지급에 앞서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는가?
	수급사업자가 부당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는가?

원사업자금지사항

공정거래가이드북 하도급부문

발행처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로즈데일빌딩 201)



Pulmuone

풀무원건강생활